

晴軒 金曾漢博士께서 걸어오신 길

參席者：金曾漢(서울大學校 法科大學 教授)

黃迪仁(서울大學校 法科大學 教授)

日 時：1980年 4月 16日 午後 4時

場 所：서울大學校 法學研究所 所長室

黃迪仁：先生님 안녕하십니까? 마쁘신데 이렇게 나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선 先生님의 回甲을 진심으로 祝賀드립니다.

先生님의 回甲을 맞아 평소 가까이 모시고 있으면서도 身邊에기는 모르는 것도 많아, 이번에 선생님의 華甲記念號로 發行되는 서울大學校 「法學」에 19篇의 論文과 함께 先生님께서 지금까지 걸어오신 길과 研究하신 學問에 관한 말씀을 揭載하고자 하여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金曾漢：감사합니다.

黃：陰曆으로는 3月 19일이 生辰이십니까?

金：그래요. 今年에는 陽曆으로 5月 3일이 되더군요. 당시의 陽曆生日은 나도 모르지요. 그런데 언제 한 번 알아보니 5月 6일이 되더군요.

I. 幼年時 및 家庭

黃：그러면 해마다 陰曆으로 生辰을 지내시겠네요. 먼저 先生님의 出生하신 곳과 成長하실 때의 말씀을 좀 해 주세요.

金：그러죠. 내가 태어난 곳은 忠南 扶餘郡 九龍面 論峙里예요. 그곳에서 아주 어린 시절을 보냈지요.

그런데 나는 國民學校를 네 곳이나 다녔

어요. 九龍普通學校에 入學하여 2年間 다니다 9歲때 公州로 이사를 했어요. 그러나 公州邑內에는 빈 자리가 없어 하는 수 없이 外家가 있는 公州郡 儀堂面에서 儀堂普通學校에 다녔어요. 다시 1年後 邑內로 와서 公州公立普通學校를 다니게 되었는데 그곳도 얼마 다니지 못했어요. 5學年 1學期까지 다니고 平壤으로 이사를 하여 그곳에서 普通學校를 졸업하고 平壤師範을 다니게 된 것입니다.

黃：네. 그러셨군요.

이제 先親이신 金翼鎭先生에 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先親께서는 平壤에서 辯護士를 지내셨지요.

金：당시 보통 法專을 나오면 裁判所에서 書記를 했죠. 先親계서도 京城專修學校를 졸업하시고 洪城에서 裁判所書記를 하시다가 5號試驗인가 하는 일종의 判事特任試驗에 합격하셔서 判事로 임용되셨는데 그 해에 내가 출생하여 한해에 두 경사가 겹치게 되었죠. 그런데 初任地가 忠州였는데 한번은 債權者인 日人巨商原告와 被告人인 韓國人 사이의 사건에서 日人에게 敗訴判決을 내리신 일이 있었답니다. 新任判事가 當時 無條件 有力했던 日人에게 敗訴判決을 내렸으니 당시에는 참으로 sensation을 일으켰던 모양입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 좌천당하시어 江景으로 전임되셨죠. 先親께서 江景에 계실 때 親喪을 당하셨는데 장례비용이 부족했음

니다. 사실 判事生活 8년에 남의 物件이라고는 지푸라기 하나 내집에 들어온 것이 없다는 것을 긍지로 여기실 정도이었습니다. 그래서 公州에 계신 저희 큰 外叔의 주선으로 돈을 빌어 장례를 치르셨답니다. 그 후 그 빚을 갚기 위해 平壤으로 자원하여 전근하셨는데, 그 까닭은 당시의 전근여비로 빚을 갚으실 생각이었던 까닭입니다. 그리하여 平壤에 계셨는데 그 후 覆審法院 判事까지 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覆審法院 判事라면 韓國人으로서는 최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며 그 이상의 진급은 불가능했죠. 그래서 先親께서는 判事生活 8년만에 法服을 벗고 辯護士개업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黃：解放後에는 大法官까지 하셨잖았습니까?

金：8.15解放後에는 平南人民委員會 治安部長을 하셨는데 그때의 얘기도 참 많습다. 당시의 委員長은 曹晩植先生이셨는데 그 조직구조를 보면 각 部長은 民族主義者를 내세우고 次長은 철저한 共產主義者를 앉혀 모든 실권은 次長이 잡고 있고 人民에 대해서는 部長이 責任을 지게 되어 사실상 先親과 같은 분들은 이용만 당한 셈이죠. 그래서 몇 달 가지않아 그만 두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 당시 모스크마 3相會議가 있었는데 소련의 말렌코프가 平南人民委員會를 긴급 소집시켜 3상회의결과를 절대 支持한다는 성명을 내라는 명령을 내렸죠. 이때에 曹晩植선생은 이 요구를 완강히 거부하셨으며 이로 인해 계속 연금당하시게 되었는데, 이때 曹晩植선생과 함께 끝까지 버틴 이가 바로 先親이었습니다.

그러나 先親께서는 연금당하시지는 않고 집으로 오셨는데 몇일 후 소련군인들이 급습하여 남쪽과 연락을 했다는 누명을 씌우고 가택수사를 했죠. 그래도 증거가 없자 연행되어 소련군 감옥에서 7개월간 복역하셨는데 절대로 월남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시고 풀려나셨죠. 그 후 기회를 봐서 일남을 하였고, 처음에는 辯護士를 하시다가 그 후 大法官이 되셨습니다.

그러시다가 1949년에는 檢察總長이 되어서 6.25事變이 나기까지 계셨지요.

II. 師範學校時節

黃：잘 알겠습니다.

이제 선생님께서 法學을 택하신 동기를 좀 말씀해 주시죠. 혹 先親께서 권하신 바는 없었는지요?

金：平壤師範에 다닐 때 日人博物(生理衛生·地質礦物 포함)선생 한분(續先生)과 가까이 지내며 나도 博物을 좋아했으므로 그분의 지도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분은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실력도 대단했습니다. 나도 信念이 아무것을 하더라도 하나를 깊이 있게 끝까지 해야한다는 사람이었으며 그분의 감화로 生物·天文學공부에 뜻을 두고 별자리에 취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허무는 그 분이 내게 졸업후의 희망을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生物學공부에 뜻이 있음을 밝히자 그 분께서는 상급학교에 진학할 것을 권장하셨습니다. 그가 하시는 말씀이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외국에서 알아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으니 외국어, 특히 영어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졸업후 약 2년간 훈도생활을 하면서 專檢(專門學校入學者資格檢定試驗)을 거쳐 豫科에 진학하였는데 원래는 生物에 뜻이 있었습니다. 37년과 38년 여름까지 訓導생활을 하다가 38년 가을에 日本에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가서 약 2개월쯤 있다가 脚氣病에 걸려 귀국했는데 12월이 되어 第5高 理科와 城大 文科에 지원하는 원서를 써놓았습니다. 결국 城大에 文科를 지원한 까닭은 城大에는 生物學科가 없었고 그와 유사한 醫科는 병든 사람을 다루어 싫은 느낌이 들었던 까닭이죠.

어디에 제출하느냐로 망설이고 있을 때 先親께서 하시는 말씀이 日本에서 각기명이 걸린 것으로 보아 日本의 풍토가 맞지 않는 것 같으니 가끔씩 韓國에서 공부하는 편이 낫지 않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城大 文科에 지원하게 되었고 數學을 잘 하여 머리쓰는 것이 數學과 비슷한 法科를 택하게 된 것입니다.

黃: 그렇다면 先親께서 法學전공을 권하신 바는 없었군요.

金: 그렇죠. 先親은 나에게 工夫에 관해서는 일체 간섭하지 않고, 공부하라는 말도 하지지 않았읍니다. 상당히 우연한 모멘트로 法學을 하게 된 거죠.

黃: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日人선생님께 관해서 좀 더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金: 그 분은 원래 日本海軍兵學校에 다니셨읍니다. 재학시에는 boat선수, 육상선수를 하셨을 정도로 운동에도 소질이 있었죠. 그런데 肺를 앓게 되어 退校를 하셨읍니다. 그후 건강을 회복하시어 廣島高等師範學校에 입학하셨으며 졸업후 바로 平壤師範學校에 오시게 된 거죠.

그 분의 持論은 아무 것이나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급할 때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나 무엇이랴도 좋으니 한 가지만 徹底히, 적어도 그 한 가지로 밥벌이 할 수 있을 정도로 철저히 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분 자신이 平壤에 계실때에도 식물채집 등을 하시면서 끊임없이 자신의 연구를 허셨는데 그 열성이 어느 정도냐 하면 한 번은 같이 비오는 날 비를 맞으며 식물채집을 간 일이 있습니다. 그때 다른 日人先生 한 사람이 그 분에게 몸도 건강치 못하는데 너무 무리한다고 만류하셨읍니다. 이 말에 대해 그 선생님께서는 “식물채집을 하다가 죽는다면 다다미방에 누워있다가 죽는 것 보다 낫지 않은가?”라고 말씀하시며 식물채집을 계속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분은 우리 학급의 담임이셨는데 그 분의 성격은 대쪽같이 곧고, 日本 將校의 기질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아침조희때 복장검사를 하는데, 한번은 바지가 타진 학생이 천이 없어 못케맨다고 하자 자기 양복천을 찢어주시며 케매오라고 한 일도 있었습니다. 또 農業實習때 소나기가 와도 그 분이 계시면 실습활동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그 후 결국 肺病으로 이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 분의 父親께서 보내신 편지를 보니 「植物과 動物」이란 수준 높은 학술지를 보시다가 손에 쥐고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정말 그 분은 人生과 學問이 하나로 된 분이십니다.

黃: 네. 그렇다면 師範學校 在學時에 선생님께 가장 큰 영향을 주신 분 같은데 선생님의 性格도 그 분의 영향을 받으신 게 아닌지요?

金: 다분히 그렇다고 나 자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Ⅲ. 大學生活

黃: 이번에는 大學에 들어오신 다음의 얘기를 좀 해 주시죠.

金: 師範學校를 졸업하고 鎭南浦에서 敎員으로 있으면서 專檢을 쳤죠. 당시 師範學校尋常科出身者에게는 上級學校 進學資格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專檢合格後 입시준비관계로 1년간 있다가 1939년에 豫科에 入學했어요.

당시 師範學校에서는 週 2時間밖에 英語를 가르치지 않았는데 그나마 그것도 隨意科目이어서 及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城大豫科入學試驗에서 英語試驗은 英語文章을 읽는것을 듣고 그 내용을 쓰는 것이 있었는데 英語는 거의 혼자서 공부했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했읍니다만 무난히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배우는 獨語만큼은 뒤지지 않아야겠다고 단단히 마음먹고 열심히 했어요. 그때 豫科에서는 주로 外國語공부를 열심히 하였지요.

黃: 당시의 獨語時間이 꽤 많았다던데요.

金: 그렇죠. 1주일에 10시간씩이었으니깐요. 豫科 3년간 배우고 나니 웬만한 獨書는 모두 읽을 수 있겠다는 자신이 붙더군요.

黃: 그때 공부하시던 方法을 좀 말씀하여 주십시오.

金: 아침 8시부터 밤 9시까지 쉬는 날 없이 圖書館을 이용했어요. 그게 건강유지의 방법이기도 했어요. 웬만큼 무리하더라도 규칙적인 생활만 한다면 사람의 몸에 병이 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民法 등의 경우에는 六法全書의 각 條文에 標題를 붙여, 무엇이 몇條, 몇條는 무엇이라는 것을 외었지요. 방에다 條文一覽表(數字만)를 붙여놓았어요. 法學공부는 아무래도 條文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教科書를 暗記할 필요는 없다고 보며, 暗記보다는 理解가 앞서야 올바른 法學을 할 수 있습니다.

黃: 선생님께서는 學兵으로 日本에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언제였나요?

金: 學部 3學年때 갔어요. 學兵問題가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學部 2學年 가을이었어요. 그 당시 우리가 졸업하기 위해서는 27單位(學點)를 취득해야 했는데 20單位 以上 취득하고 學兵으로 간 학생에 대해서는 집으로 졸업장을 보내 주었어요.

黃: 學兵으로 계시면서 보고 느끼신 일이 많으셨을텐데요.

金: 그렇죠. 처음에 大阪師團 野砲연대에서 6개월의 교육을 받고 兵科幹部候補生試驗에 앞서 經理部幹部試驗이 있었는데 나는 그것에 합격해서 경리부간부후보생으로 갔어요. 그래서 大阪師團司令部에서 전반기교육을 받고 다시 將校가 되는 甲種과 下士官이 되는 乙種으로 구분했는데 나는 갑종에 뽑

혔어요. 갑종간부후보생의 전체교육이 新京에서 있었는데(陸軍 제815部隊) 졸업시에 校長의 말을 듣고 戰況이 日本에 극히 불리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大阪師團出身으로는 나의 성적이 가장 좋았는데 韓國人이라는 이유로 나혼자만 히로시마(廣島)에 배속이 되었어요. 그래서 열차편으로 히로시마에 도착했는데 도착하자마자 공습경보가 울리기엔 얼마전까지 내가 있던 오오사카에 수많은 B-29가 폭격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때 죽을 고비를 한번 넘겼죠. 그런데 히로시마에서도 나를 차별대우하여 서열 1위부터 7위까지의 사람중 나혼자만 浜田(島根縣)에 있는 연대에 배속되고 나머지는 모두 사단사령부에 배속되었어요. 그래서 浜田의 연대에서 근무했는데 그때 너무 시간적 여유가 많아 승마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던 중 히로시마에 있는 사단 사령부에 가야할 일이 생겼는데 나에게 가라는 것을 동료인 쯔라는 일본인을 대신 가게했죠. 쯔가 도착한 다음 날 히로시마에 원폭이 투하되었어요. 결국 쯔는 얼마후 죽게되고 나는 또 한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긴게 됐죠.

IV. 서울法大 初創期

黃: 이제 선생님께서 教職에 서시게 된 때의 상황을 좀 얘기해 주시죠.

金: 나는 46년 3월 1일 京城大學 法文學部 刑法研究室 助手로 채용이 되었어요. 그런데 같은 해 8월 22일 國立서울大學校設置令이 軍政法令 第102號로 公布되자 그날부터 國大案반대운동이 일게 되었는데 이는 말하자면 공산주의자들의 장난입니다. 그래서 城大法學科 教授들이 총퇴진하게 되었으며 朱宰璜, 金甲洙선생 같은 분도 좌익은 아닌데도 어쩔 수 없이 퇴진하셨죠. 그때 나는 교수가 아니었으므로 학교를 그만 둘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럴즈음 당시 法專校

長으로 계시던 高秉國선생께서 初代 法大學長으로 되셨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高學長과 친분이 두터운 陸芝修先生을 통하여 助手를 계속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드렸죠. 얼마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다가 高學長이 만나자고 한다는 말을 듣고 집을 찾아가 만나뵙게 되었어요. 그런데 高學長님이 하시는 말씀은 教授陣의 편성에 관한 것이었는데 대학교육을 정규로 받고 연구생활까지 해 본 사람이 적다면서 내게 직접 講義를 맡으라는 부탁을 하신 것입니다. 刑法研究室 助手로 있을 때에 비르크마이어(Birkmeyer), 빈딩(K. Binding) 등의 책을 열심히 읽었으므로 기술적이고 분량도 적은 刑事訴訟法은 맡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高學長님 말씀이 民法, 刑法등은 할만한 기성인들이 많으니 젊고 외국어실력이 있는 사람이 요구되는 西洋法制史를 맡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西洋法制史와 大陸法の 專任講師로 教職生活를 start하게 된 거죠.

黃: 그럼 당시에는 그 두 科目만 講義하셨나요?

金: 아니예요. 그게 이렇습니다.

그당시 平壤師範學校 시절의 恩師이신 李崇寧선생께서 豫科部長으로 계시면서 내게 豫科의 獨語講義를 부탁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高學長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高學長님 말씀은 法大에도 獨語講義가 있으니 그것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學部에서는 西洋法制史와 大陸法 강의를 하고 專門部에서는 獨語를 강의하게 된 거죠. 당시 俸給은 쌀 대두 한 말의 액수이었어요.

黃: 당시에 左右翼의 對立이 심하여 상당히 어수선했다면데요.

金: 아까 얘기한 것처럼 國大案反對運動 자체가 左翼이 조종한 결과입니다. 이들은 美帝가 韓國의 靑年들을 美國植民地의 수족으로 만들기 위한 수작으로 國立大學校를

설립한다고 선전하였으며 심지어 高校生들까지 이에 가담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등록을 방해하는 등 갖은 행패를 부렸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등록하여 학교가 문을 열게 되었죠.

당시에 國立서울大學校 理事會가 있어 이 理事會에서 각 단과대학이 사용할 건물을 지정했죠. 1946年 9月 28日에 淸涼里에 있는 舊法專校舍에서 開講은 했지만 워낙 먼데다 交通이 不便하여 거의가 休講상태에 있다가 드디어 46년 11월 7일 학생총회결의로 1주일동안 同盟休學에 들어갔습니다. 소련의 혁명기념일인 11월 7일을 잡아 맹휴를 한 것을 봐도 좌익의 조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좌우지간 1주일후 盟休계속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總會가 열렸는데 학생들의 발언내용은 공부하자는 쪽이 지배적인 의견이었음에도 投票結果는 盟休를 계속하자는 쪽으로 기울어져 休講이 繼續되는 가운데도 일부 우익계 학생들은 강의를 계속 해서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다음 해 2월에 가서 서울대 전체가 正常化 되었는데 本部에서는 主動學生을 除名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때 다른 대학에서는 1~2명씩 제명하고 말았지만 法大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내가 30명의 명단을 高學長께 제시하면서 “일단 공산주의자들의 끄나풀이 된 이상 저들에게 자유행동이 허용되지는 않으며 주동자가 따로 있는것도 아니므로 모두 제명함이 옳다”고 주장했죠. 이에 대해 학장께서는 모두가 사랑하는 제자들인데 많이 처벌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내가 그 30명의 학생들의 모든 생활에 대해 학장님이 책임을 질 수만 있다면 내가 양보하겠지만 그럴 수 없다면 제명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면 다시 한 번 강력히 주장했죠. 결국 30명 모두 제명되고 말았습니다. 그후 6.25까지 법대에서는 좌·우익간의 싸움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V. 6.25 事變

黃: 네, 그러면 이제 6.25사변 당시 선생님이 겪으신 일들을 좀 말씀해 주시죠.

金: 法大教授들은 대부분 釜山에 피난갔습니다만 각자 개인적으로 행동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나의 경우 가족들은 서울에 남겨두고 釜山으로 갔다가 9.28收復 후에 만났습니다. 그러다 1.4後退때엔 진가족이 大邱로 갔습니다. 당시 나는 陸軍本部 文官으로 들어가 복무하면서 강의를 했는데 大邱에서는 高大, 大邱大, 靑丘大 등에서, 그리고 釜山에서도 法大이외에 弘益大, 東國大, 釜山大 등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과목은 그전부터 해오던 西洋法制史와 로마法이었습니다.

그 밖에 기억나는 일은 釜山에서의 일인데 학기말 시험칠 때의 일입니다. 시험전날 科目別出席을 조사하여 應試資格의 有無를 검토하여 資格있는 學生의 수험번호를 정하여 학생들 번호표를 만들어 시험장 각 책상에다 붙이고 시험칠 때에 지정된 좌석에 앉으라는 말을 했죠. 그게 어디 제대로 되겠어요? 아니나 다를까 학생들이 제멋대로 앉았더군요.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범대란 질서가 생명인 곳이다. 나혼자의 힘으로 여러분을 당할 수는 없으니 여러분들이 힘으로 내 의사를 무시한다면 난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진정 法의 生命인 질서가 지켜져야한다고 생각이 되면 제자리에 앉아주기 바란다.”고 했죠. 그랬더니 질서정연하게 제자리를 찾아 앉아서 무사히 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黃: 선생님께서는 學生課長을 오랫동안 하셨는데 언제부터 하셨나요?

金: 50년 1월부터 法大 學生課長을 했죠. 당시에 사실 학생들을 엄하게 다루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는 무서운 존재였죠. 학생

과장을 한 기간은 약 7년쯤 됩니다.

당시의 일로서 기억이 나는 것은 6.25때 부산에서 있던 일입니다. 방학동안에 교사로 사용할 목조가건물을 건축했는데 이것이 개학이 되어도 준공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편법으로 1주일 내내 교련만 했어요. 학생들이 이에 대해 教練反對決議를 하기위해 집회를 가졌죠. 내 생각으로는 그대로 두었다간 교련반대결의를 하게 될 것은 뻔하고 그렇게 되면 전시이었으므로 학생들이 당하는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집회중에 나가 나서서 심하게 호통을 쳤더니 학생들이 解散하더군요.

黃: 先生님께서서는 매우 엄한 교수이셨지요.

金: 나만큼 엄한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부산 피난중에 白晝團, 땃벌떼 등이 난무하던 그 시대에도 法大에선 뼈타가 한장도 나오지 않았어요. 이렇게 되니 어떤 학생들은 내가 法大生들을 명신으로 만들고 있다고 不平하기도 했습니다만, 학생들이 떠들어 봐야 아무 성과가 없다는 등의 말을 하며 설득했지요.

黃: 研究生生活에 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金: 大邱에 있다가 釜山으로 내려간 것이 52년초였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法律學辭典編纂에 착수했는데 그때 같이 일한 사람으로는 金道昶氏와 安二濬氏등이 있고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도와 주었어요. 그런데 원고가 거의 탈고될 무렵 나는 미국으로 가게 되었고, 54년에 내가 美國에서 돌아온 후에 靑丘文化社에서 법률학사전이 나왔습니다. 그후 10년이 지나서 64년에는 法文社에서 나왔지요. 이번에도 역시 나와 金道昶, 安二濬이 中心이 되어서 했지요.

VI. 交換教授로

黃: 미국유학이 선생님의 研究에 많은 영

향을 끼친 것 같은데 그 당시의 얘기를 좀 해 주시죠. 우선 언제 어떤 연유로 가지게 되었는지요?

金 : 내가 渡美한 것은 53년 9월이고 Smith-Mundt 장학금으로 뉴·올리언즈의 툴레인(Tulane)대학에 가서 1년간 연구했습니다.

黃 : 그곳에서 英美私法을 研究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民法에 대한 관심은 언제부터 가지셨나요?

金 : 그곳에서 英美私法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가기전에 西洋法制史와 로마法을 강의했는데 그 내용은 사실상 民法이 아닙니다. 그래서 툴레인대학에서 주로 연구한 것도 私法이었죠. 그런데 刑法研究室助手 시절에 Geldart의 Elements of English Law를 읽은 적이 있고, 또 Jenks의 Digest of English Civil Law를 번역한 것도 있었던 까닭에 英美法에 대한 기초지식이 어느 정도 있었으므로 연구하는 데 큰 곤란은 없었습니다.

黃 : 가셔서 느끼신 점이 많을텐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Case-Method식 강의가 아니었습니까?

金 :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서 제일 처음 뼈저리게 느낀 것은 語學공부에 대한 아쉬움이었습니다. 학교를 갓 졸업하고 온 어린 사람들이 형편없는 영어실력으로 출발하여 얼마 지나지 않아 놀랄만큼 진전한 것을 보고는 역시 外國語는 젊었을 때 해야한다는 것과 내가 너무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당시 33歲이었는데도 늦다는 느낌이 들었으니 젊은 학생들이 때를 놓치지 말고 語學공부를 열심히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黃教授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은 Case-Method식 강의였습니다. 툴레인대학은 1830년대에 창립된 法學教育의 중심지로서 역시 Case-Method식 강의가 法學教育의 最高方法이란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래서 귀국후 약 1년간 日

本大審院判決을 교재로 하여 Case-Method식 강의를 시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Moot Court의 영향을 받아 法大에서 최초로 民事模擬裁判을 시도하기도 했죠. 6.25以前에도 刑事模擬裁判이 있긴 했으나 다만 민사모의재판과는 그 성격이나 준비과정 등이 달랐죠.

VII. 新民法의 制定 및 民法研究

黃 : 新民法 制定 당시 하신 일을 말씀해 주십시오.

金 : 미국에서 돌아와 Case-Method식 강의를 시도하고 있을때 民法草案이 발표되었습니다. 新刑法의 경우에는 법률이 공포될 때까지도 형법교수들이 刑法草案의 內容을 몰랐었는데 民法의 경우에는 다행히 일찍 알려져 연구·비판의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당시 高學長께 건의하여 서울의 民事法擔當者들의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民法草案研究會」라는 모임을 결성하여 總則, 物權, 債權의 편별로 몇몇 사람들이 분야별로 맡아 검토했는데 당시 나는 物權분야를 맡았습니다. 그후 연구결과를 「民法案意見書」라는 책자로 만들어 玄錫虎의원을 통하여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 분이 주동이 되어 우리의 의견가운데 많은 것이 채택되었는데 예컨대 “請約”이란 용어가 그렇고 (李恒寧 교수가 만듦) 共同所有의 類型 또한 그렇습니다.

黃 : 당시 採擇如否를 결정하던 분은 누구였나요.

金 : 채택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신 분은 張環根의원 이었습니다. 그 분이 國會民法案審議小委員會의 委員長으로 계시면서 共同所有의 유형도 쉽게 채택했다는 얘기를 후에 들었으니까요.

黃 : 선생님께서서는 安二潁先生님과 共同으로 民法教科書를 집필하셔서 民法學界에 기여를 하셨는데, 당시의 얘기를 좀 해 주시죠.

金 : 安辯護士가 그 전에 이미 日本의 我妻 榮教授의 교과서를 모두 번역해서 大邱에 있는 文星堂에서 출판한 것이 있었읍니다. 그 뒤에 我妻 教授의 교과서 개정판이 나오자 文星堂에서 개정판의 번역을 安辯護士에게 다시 부탁했어요. 그때에 安辯護士가 나를 찾아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물길래 내가 말하기를 日本과 韓國法사이에는 現行法令이 다르고 그밖에 事情이 다르므로 이왕 원고를 다시 쓸 바에야 이 기회에 우리나라 법에 맞게 새로 쓰는게 낫지 않겠느냐고, 그리고 혼자서 하기 힘들다면 나와 함께 해도 좋다고 했죠. 그랬더니 安辯護士가 좋다고 하여 博英社에 말하여 「物權法」이 나오게 된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博英社와 法文社에서 財産法分野의 共編著가 나왔지요. 그러다가 1960년부터 내가 單獨으로 民法講義書를 내고 있지요. 그것도 物權法에서 시작하여 民法총칙, 債權총론이 나왔고, 이번에 物權法은 改稿版을 냈지요. 債權各論은 執筆中입니다. 法學通論은 원래 普通考試의 강의록으로 1949년에 每月 나왔던 것인데 釜山 避難中에 創人社가 나에게 연락없이 출판했어요. 그런데 책이 꽤나 잘 팔렸나 봐요. 그후 法文社로 넘어갔다가 지금은 眞一社에서 내고 있지요.

黃 : 선생님께서서는 우리 民法에 共同所有에 관한 條文이 規定되는데 있어서 寄與를 하셨는데 그에 관한 見解를 말씀해 주세요.

金 : 合有와 總有가 우리 民法의 특색이긴 한데 그에 대하여 의문을 품는 사람이 民法學者中에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에 物權法 教科書를 改稿하면서 合有, 總有에 관한 判例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는 그만큼 이용하는 예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를 바탕으로 合有, 總有의 研究를 좀 더 해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共同所有의 研究자체가 아직 완결된

것은 아니고, 내생각 같아서는 이를 바탕으로 人法の 연구에 몰두해 봤으면 합니다. 共同所有의 形態는 人的結合의 物權法에의 반영이니까요.

그리고 物權의 期待權에 관해서도 좀 더 깊이 해 봐야겠다는 생각입니다.

黃 : 제가 미국 버클리에 있을 때 한 美國人 社會學教授가 우리나라의 契에 대하여 굉장히 깊은 연구를 한 것을 본 일이 있었읍니다. 우리나라에는 歷史上 사실 團體組織이 많이 발달하지 않았읍니까? 제 생각으로는 그 까닭은 우리나라에는 奴隸制度란 있긴 했어도 그렇게 광범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인가 하는데요. 이는 마치 奴隸制度가 있었던 로마에 비하여 로마時代와 같은 奴隸制度가 발달하지 않았던 獨逸의 경우에는 그대신 團體가 훨씬 발달했던 것과 같은 논리죠. 團體라는게 우리나라에서는 歷史的으로 보아 經濟上 상당히 重要的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金 :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國民의 意識은 個人主義보다는 相互扶助의인 團體主義를 지향하고 있거든요.

黃 :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團體法 분야의 발달이 상당히 미진한 것 같아요.

金 : 사실 새마을 運動과 관련해서도 法的問題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앞으로 많은 연구가 기대되는 분야지요. 요는 생활주변에 관한 연구풍토의 정착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죠. 사실 外國의 것을 제대로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도 큰 의문이고요.

黃 : 오랫동안 研究生活를 해 오시면서 느끼신게 많을텐데 지금의 소감은 어떠신지요?

金 : 젊었을 때엔 나도 참 용기가 많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物權法上 卷을 쓸 때에 당시 이것은 4년이 걸렸는데 獨逸에서도 新學說이었던 物權의 期待權을 취급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채택하기도

했거든요. 당시의 용기에 대해 아직도 별로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物權行爲의 獨自性 문제도 요는 어느것이 거래의 실제와 합치하느냐 하는 것인데, 난 아직도 獨自性的의 문제는 明白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또 民法制定時에 앞에서 말한 「民法案 意見書」에서 나는 物權變動에 관하여는 舊法上의 意思主義를 답습함이 좋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리하게 形式主義의 採擇을 강행한다면, 婚姻에 있어서 申告를 하게 함으로써 形式婚主義를 취했다니 「內緣의 妻」라는 判例法이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內緣의 所有權」(?)이란 判例法이 나올 것이라고 당시에 말했었죠. 그런데 形式主義를 취했다니 결국 그렇게 되고 말았죠. 각종의 特別措置法과 각종의 稅法등에 말하는 「事實上의 所有權」이란게 바로 그것 아닙니까. 이것은 결국 理論的으로는 物權的 期待權으로 설명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黃: 선생님께서서는 劉基天 교수님과 함께 서울 法大에서 가장 오래 在職하신 교수님이신데 그간의 연구생활에 대해 갖는 느낌은 어떠신지요?

金: 法學教授로 스타트한 것이 46년이었으니 꽤 오래 되었지요. 최초로 글을 쓴 것은 「法政」에 실었던 「民法 第14條에 관한 判例 批評」이란 글이었어요. 문제의 民法 第14條는 妻의 無能力을 규정한 것이었고 大法院은 그 규정이 失效하였다고 判示했어요. 물론 시대정신에 비추어 보면 第14條는 부당하지만 과연 大法院이 法條文을 無效라고 선언할 권한이 있느냐는 내용의 내 글이 發表되자 贊·反 두 쪽으로 나뉘어 활발한 法律論爭이 전개되었습니다. 요즘에도 그런 풍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그간 열심히 글도 쓰고 책도 냈지만 어떻게 보면 아무 초점없이 다치는대로 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所有가 뭐냐라는 問題를 研究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

직 시작도 못하고 있는 형편이니까요. 하여간 物權法 책을 제일 먼저 냈고 그것이 내가 가장 크게 관심을 갖는 분야입니다. 物權法에서 뭔가 일했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共同所有形態임은 黃教授가 말씀하신 바와 같고 이를 기점으로 하여 人法의 문제를 연구해 보고 싶어요. 그리고 物權的 期待權理論도 좀더 發展시켜 나갈 價値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黃: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평소의 生活信條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金: 生活信條라고 해야 할 것은 별로 없습니다. 있다면 다른 사람을 批判하기에 앞서서 나 자신을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함없는 생각이 있다면 죽을 때까지 책을 들여다 볼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함을 느낄 수 있으며, 쓰는 것은 부차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그 일이 내게 평생 동안 주어진 本務가 아닌가 하고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옛날 獨語를 강의하던 때에 늘 얘기하던 게 있습니다. 獨語의 用途는 오직 한 가지 뿐이며 그것은 學問을 하는데 쓰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요사이 학생들도 이 말을 명심해서 獨語, 그 밖의 外國語를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黃: 法大 在學生에게 하실 말씀을 해 주십시오.

金: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듯이 大學이란 學問을 하는 곳입니다. 司法試驗 등의 각종 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말리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司法試驗이나 行政高試란 기왕 공부한 것을 스스로 테스트해 보는 의미에서 응시해 보는 것으로 생각하여야 하지, 司法試驗 自體가 最高의 理想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의 풍조를 보면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試驗에 合格하여 法曹人으로 나가더라도 大學에서 學問을 한 기초를 가지고 살아 있는 자료를

이용하여 그때부터 연구를 시작하라는 말을 하고 싶군요.

역시 大學이란 學問을 하는 곳이지 다른 것을 위한 手段인 것은 아닙니다. 學問을 떠나서는 大學이라고 할 수 없지요.

黃: 우리들 弟子에게 더 없이 기쁜 것은 선생님이 건강하시고 研究를 계속하고 계시

는 것입니다. 부디 앞으로도 더 많이 研究 하실 것을 期待드립니다.

金: 지금까지 못한 것을 이제부터라도 해야하겠어요.

黃: 선생님 오랫동안 말씀하시는데 수고 하셨습니다.

金: 黃교수도 수고하셨습니다.